

## 한의과대학발전추진위원회규정

제정 2016.08.30.

**제1조(명칭)** 이 위원회는 한의과대학발전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한다.

**제2조(목적)** 이 위원회는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건의한다.

1. 한의과대학 발전계획의 수립, 분석·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
2. 한의과대학 발전계획 관련 재정에 관한 성과 분석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한의과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
**제4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12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촉위원 중 외부위원을 7인 이내 위촉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,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

③ 위원장과 위원은 한의과대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**제5조(회의)** ① 회의는 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갖으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.

**제6조(보고)** ①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,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7조(간사)**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**제8조(실무소위원회)** 제3조(기능) 위원장은 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전계획 수립, 분석·평가, 개선에 관한 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할 수 있다.

**제9조(운영세칙)** 이 규정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**부 칙** (기획예산부-670, 2016.08.30)

이 규정은 2016년 08월 30일부터 시행한다.